

조례안 심사 보고서

총무위원회

(

목 차

| | | |
|---|-------------------------------------|----|
| 1 |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1 |
| 2 | 거창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 | 3 |
| 3 | 거창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5 |
| 4 |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7 |
| 5 |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9 |
| 6 |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 | 11 |
| 7 |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자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13 |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03. 3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04. 0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04. 10.

2. 개정이유

-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15. 01. 0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을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함
- 나. 위원회 기능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 다. 조직개편사항 반영함(안 제3조)
 - 건설교통과장 ⇒ 건설과장

4.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통합, 운영하였으나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분리하여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03. 3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04. 0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04. 10.

2. 제정이유

-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15. 01. 01. 시행)이 개정되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 내용에 대한 적정성 등의 심의
 -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사항 대행
- 나.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유를 규정(안 제4조)

4.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제정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통합, 운영하였으나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03. 3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04. 0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04. 10.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14.9.25)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나.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 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 체결
- 다. 출자·출연 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사업 대행시 경비의 범위를 정함(안 제7조)
- 라.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10조)
 -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하여 평가
- 마.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11조)
 -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실시
- 바.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관하여 정함(안 제13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제정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14.09.25.)으로 출자·출연기관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03. 3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04. 0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04. 10.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라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제정 시 지역치안협의회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시적으로 명시하였으나,
-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계속 존속시켜야 함에 따라 협의회 존속기한을 삭제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지역치안협의회 존속기한 삭제(안제6조)

4.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치안협의회를 계속 존속시킬 필요성에 따라 2015년 3월 24일까지로 명시한 존속기한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03. 3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04. 0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04. 10.

2. 개정이유

-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세특별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등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15.12.31일까지 연장(안 제2조제1항)
- 나.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축소 및 기한연장(안 제3조)
 -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75경감
 -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50경감
- 다. 복합물류 터미널사업시행자의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에 대한 감면축소 및 연장(안 제4조)
 -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25경감
- 라.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을 정함(안 제5조)
 - 100분의 50경감

- 마.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에 따라 취득시점 기준연장함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6조)
 -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8조)
- 바.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세 감면사항 신설(안 제9조)
 - ※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78호)
: 거창 덕유산 스파랜드(가조면)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축소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경상남도 도세감면조례 취득시점 기준을 연장하는 등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03. 3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04. 0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04. 10.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하여 “경리관”이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이 “부채관리관”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거창군 조례 중 관련 명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 중 회계관계공무원 명칭을 일괄개정함
 - 경리관 ⇒ 재무관
 - 채무관리관 ⇒ 부채관리관

4.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는 「지방재정법」(2014. 11. 29.시행)이 개정되어 “경리관”이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이 “부채관리관”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거창군 조례 중 관련 명칭을 일괄 정비하여 별도의 개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 조례 개정 시차로 인한 시행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03. 3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04. 0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04. 10.

2. 개정이유

- 생활이 어려운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자들에게 생활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한센인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비 및 의료비 지원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제3호)
 - 한센인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비 및 의료비. 다만,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하고, 지원 범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자들에게 생활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 법제처 회신에서

- 한센인 정착촌의 한센인들에 대한 생활비 등의 지원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예외적 재정 지원 대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 한센인 정착촌의 한센인에 대한 지원사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 한센인들에게 생활비등을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무로 볼 수 있으나
- 한센인들에 대한 지원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어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규정만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 117 판결 참조).
- 한센인 정착촌의 한센인들에게 생활비등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면(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음

○ 따라서, 한센인 정착촌의 한센인들에게 생활비등을 지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 등을 참고하고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 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회신되었음.

- 이와같이 이 개정조례는 한센인 지원 근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당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